

부패방지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아이센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구성원 모두가 국내외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회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 자회사 및 해외 지사·법인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② 이 규정에서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이 가능하며, 예외적 적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각 국가별로 현지 법률 및 실정에 따라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국내 및 전 세계 모든 지방, 시, 도, 주 또는 연방 정부(또는 정부의 부서,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구)에 종사하는 구성원 또는 공식 대리인, 정부가 소유하거나 또는 지배·경영하는 사업체나 기업체의 구성원(국영기업 및 국책기업의 구성원), 공공 국제단체의 구성원(예를 들어, UN, 세계은행 등), 정당직원 및 공직 후보자 등을 의미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회사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받는 기업(소속 구성원 포함)을 의미한다.
3. "대리인"이라 함은 제품 또는 서비스 판촉, 시연이나 설명, 계약의 체결을 위해 또는 그 이행을 지원하거나 기타 대정부 업무를 위해 고용하는 에이전트, 컨설턴트, 전문 자문가(법률, 노무, 회계 및 세무관련 전문가 등) 등을 의미한다.
4. “제3자”라 함은 제3호의 대리인을 비롯하여 당사의 거래업체, 당사와 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너사(컨소시엄 등), 합작투자사 등을 통틀어 일컫는다.
5. "뇌물"이라 함은 공무원, 고객 및 제3자 등에게 사업상 이익의 획득 및 유지 등을 위하여 위법 또는 부적절하게 제공되는 일체의 유가물, 재산상 이익, 기타 유·무형의 이익 등을 의미한다.
6. "선물"이라 함은 위법 또는 부당한 대가에 대한 기대없이 제공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7. "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 기타 여가 문화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 또는 무형의 이익제공 행위를 의미한다.
8. "경조상품"이라 함은 경조사사유로 제공되는 유가물, 재산상 이익 등을 의미한다.
9. "유가물"이라 함은 매우 광범위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금품 또는

선물, 식사 및 접대, 여행경비지급, 기부금, 정치헌금, 회원권, 상품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10. "급행료"라 함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일반적인 정부의 업무(예를 들어 인·허가서 획득, 비자와 같은 정부관련 문서의 신속처리, 부당한 세관통과 지연 해결 등)에 대해 신속한 업무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11. "이해충돌"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현지 각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르고, 필요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서 별도 정의한다.

제2장 준수사항

제4조(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준수) ① 회사의 구성원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타 관계 법령의 뇌물 방지 규정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구성원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 법규(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 라 한다), 영국의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 OECD 뇌물방지협약 등을 비롯하여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원칙적 금지) ① 회사의 구성원은 공무원, 고객 및 기타 제3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상의 이득을 획득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물 기타 뇌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제안하거나 약속 또는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

② 회사의 구성원은 거래업체, 정부기관, 기타 업무와 관련 있는 제3자로부터 위법한 금전, 물품, 향응, 개인적 이익, 기타 편의를 제공받아서 안 된다.

③ 회사의 구성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또는 공무원수행사인 등에게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 받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거절하여야 한다.

제6조(예외적 허용) ① 회사의 구성원이 사업 또는 우대조치에 대한 대가로 부적절하게 금전, 유가물 기타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 등에게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② 회사의 구성원은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의 편의(계약의 체결 또는 우호적인 사업관계를 위한

일반적인 이해증진과 관련된 선물, 식사, 서비스, 접대 등)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업무상의 편의는 각국의 법률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정해진 상한선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2. 업무상의 편의는 현지 문화 및 관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업무상의 편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4. 업무상의 편의는 특정 공무원 등에게 자주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5. 업무상의 편의 비용은 영수증, 청구서, 명세서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증빙되어야 하고, 회사의 회계 장부에 정확히 기록, 반영되어야 한다.

③ 회사의 구성원은 업무상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뇌물 또는 부정한 청탁의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조금품) ① 공무원 등의 경조사 발생시 예외의 표시로 이 규정 제6조의 원칙하에 경조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에 대한 경조금품 금액의 상한선은 각국의 부패방지 법규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야 한다.

③ 경조금품과 관련된 비용은 가능한 증빙되어야 하고, 회사의 장부, 기록 및 회계서류에 적절하게 분류되어 계상되어야 한다.

제8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회사의 구성원은 업무를 위하여 공무원 등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경비는 거래처(호텔, 여행사 등)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여행경비 제공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지급기준은 각국의 부패방지 법규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실제 지출비용이어야 한다.
3. 여행경비를 지출하기 전에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무원 등의 비업무용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5. 공무원 등의 배우자 및 가족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6. 여행경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영수증, 청구서, 명세서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하여 증빙되어야 하고, 회사의 장부, 기록 및 회계서류에 적절하게 분류되어 계상되어야 한다.

제9조(급행료) 급행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일반적인 정부의 업무에 대해 그 수행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뇌물로 간주하므로 회사는 급행료의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0조(기부금)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명의로 정치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다.

② 회사의 구성원은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부패방지 법규를 위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선단체는 적법한 단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자선단체의 기부가 정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 지불을 위장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자선단체의 기부가 미국 및 국제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불법활동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로로 이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자 준수

제11조(제3자 준수) 회사의 구성원은 제3자에게 당사의 부패방지 정책을 충분히 전달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자와의 계약체결 원칙) ① 회사의 구성원은 공무원 등과 거래하는 제3자와의 계약서를 체결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방지서약을 받아야 한다.

1. 제3자는 미국 FCPA를 비롯한 부패방지 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는 부패방지에 관한 진술
2. 제3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서비스 제공 내역 및 보수의 조건 포함)
3. 제3자가 부패방지 법규 및 이 규정, 계약상의 부패방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4. 제3자가 공무원 등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

② 회사 구성원은 전항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서면으로 체결하여 당사자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검증) 회사의 구성원은 제3자를 통하여 공무원 등과 거래하는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검증절차 및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자를 추천한 자, 공무원 등과의 관계, 정치자금 기부여부, 부패방지 법규 위반 전력 등 정보
2. 제3자의 역할, 해당 역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 그러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제14조(위험신호) 제3자와 거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등으로 관계가 있는 회사 구성원은 다음 항목들을 유의해야 하며 위험신호가 발견되거나 제3자와 관련된 우려 또는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 담당부서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즉시 문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진행되는 대상 국가의 부패사태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2. 제3자가 공무원 등에 의해 특별히 추천된 경우

3. 제3자가 FCPA를 비롯한 각국의 부패방지 법규 또는 이 규정의 준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4. 제3자가 부패방지 관련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제3자가 서면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6. 제3자가 고액의 정치적 기부를 자주 하는 경우
7.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복잡한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예컨대, 제3국 계좌로 송금요구, 제3자를 경유하여 송금요구, 다른 국가에서의 지급 요구 등)
8. 제3자 업무에 대하여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통상의 비용보다 고액의 고정보수 또는 성공보수 요구 등)
9. 제3자가 해당 공무원 등과 가족관계 또는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10. 제3자가 공무원 등에 대한 영향력을 유일한 능력으로 내세우는 경우
11. 기타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4장 이해충돌 방지

제15조(사적이해관계의 회피) 회사의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직무 관련 공무원이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인 경우
2. 본인이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지휘·감독한 경우
3. 직무 관련 공무원과 금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제16조(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회사의 구성원은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조언·자문 등의 제한) 회사의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받는 행위
2. 직무 관련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상대방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 받는 행위

제18조(퇴직공직자 채용) ① 회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를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또는 취업승인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

제19조(교육) ① 회사는 구성원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부패방지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례가 있거나,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 실시 현황(일자, 참가자 등)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한다.

제6장 위반행위 제보 및 조치

제20조(위반행위의 제보 등) ① 회사의 구성원은 이 규정 및 부패방지법령의 위반 또는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 등으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구받은 회사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제1항의 신고시 직접방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제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받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1조(내부 제보자 보호) ① 회사는 부패방지 법규 또는 이 규정 위반사실 또는 의심, 우려 사실을 제보한 구성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고용관계상 또는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정당한 제보로 보지 아니하며 제보자에 대하여 보호하지 아니한다.

1. 제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우
2. 제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를 이용한 경우

제22조(윤리적 행위 포상) 회사는 부패방지 법규 및 각종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3조(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부패방지 법규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구성원에게는 민·형사상

의 법적 조치 외에 회사 취업규칙 또는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내부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회사 구성원이 부패방지 법규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로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구성원은 회사로부터 해당 벌금액 기타 손해를 상환받을 수 없다.